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안산대학교 교비회계와 유치원회계의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 합산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수익사업인 인천기독병원의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와 기본금변동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새빛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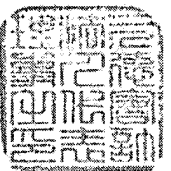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익사업인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치한 안산대학교의 교비회계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와 자금수지의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인 부속병원회계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장 영 철



2017년 4월 2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4월 2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새빛학원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